

소득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⑤본점 소재지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 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여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실제배당액	⑯소득공제 해당 여부 (⑭≤⑮)	⑰소득공제 이월금액	⑱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⑲소득공제액 MIN(⑮+⑰, ⑱)

3. 소득공제액의 이월

⑳ 사업 연도	공제가능금액		공제대상금액							㉓ 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	㉔ 공제 금액 (㉑-㉓)	㉕ 소멸	㉖ 이월 금액 (㉑+㉔ -㉓-㉕)
	㉑ 당기분	㉒ 이월분	㉑ 당기분	㉒ 1차연도	㉒ 2차연도	㉒ 3차연도	㉒ 4차연도	㉒ 5차연도	㉒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 및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 부표의 실질귀속자별 명세를 작성·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⑭배당가능이익의 90%란과 ⑯ 소득공제 해당 여부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⑰소득공제 이월금액란에는 ⑳이월분 금액을 적습니다.
4. ㉔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5. ㉑당기분란에는 ⑯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여'인 경우에만 ⑮실제배당액을 적습니다.
6. ㉒이월분란에는 ㉔사업연도별로 전기의 ㉓이월금액을 적습니다.
7. ㉑당기분란에는 당기분 금액을 적고, ㉕~㉘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㉚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란에는 ⑯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부'인 경우 ㉙계 금액을 적습니다.
9.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실질귀속자별 명세

(앞쪽)

(단위: 원)

[illegible]

⑪ 합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작성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실제배당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에 대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의 해당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하여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1. ①번호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②성명(법인명)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영문으로 적고, 외국법인은 정식명칭 전부를 영문으로 적되,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③납세자번호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납세자번호를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개 인	법 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투자등록증의 투자등록번호
(2)	(1)의 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1), (2)의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
(4)	(1), (2), (3)의 번호가 없는 경우	투자등록증의 투자등록번호	
(5)	(1), (2), (3), (4)의 번호가 없는 경우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4. ④생년월일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 "20060101"이라고 적습니다).
5. ⑤주소(소재지)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되, 영문주소인 경우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순으로 적고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6. ⑥거주구분란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거주자란”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란”에 “√”표시를 합니다.
7. ⑦거주지국과 ⑦-1거주지국코드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제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8. ⑧지급연월일란은 배당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적습니다(예: 지급연월일이 2015년 1월 1일인 경우 "20150101"이라고 적습니다).
9. ⑨귀속연월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0. ⑩지급액(배당금액)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별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⑪합계란은 ⑩지급액(배당금액)란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합계액은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1호의2서식)의 “⑮실제배당액”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